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8. . . (제 회)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7년 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주소의 부여 등에 있어 도로와 건물의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하는 평면적 부여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와 건물이 없는 산악·해안 등의 지역은 10미터를 최소 단위로 하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점차 공중과 지하로 넓어지고 도시 구조 및 건물도 입체화·대형화되면서 입체 도로를 이용하여 건물의 상·하층부로 직접 진입하거나, 건물 내부도 이동 경로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위치 찾기가 어려워졌으며, 특히 도로명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표기 지역 이외 장소에서의 국민 활동 증가로 해당 지역에 맞는 위치 표시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위치 부여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물류의 이동과 위치 찾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고, 안전사고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명주소 등의 변경으로 인한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변경을 공적장부 관리기관 등이 직접 변경하도록 하고, 도로 건설 및 건물 신축 등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국민의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도로명주소법」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찾거나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꾼 것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미래도시에 대응하는 주소 부여 및 관리 체계 마련

- 1) 지상 및 지하 공간 등에 건설되는 입체도로와 대형 건물 내부도 이동경로를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 2)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시설물·장소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위치에 맞는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제22조)

나. 도로명주소 결정 등에 따른 국민 신청 및 참여권 확대

- 1) 도로 건설이 확정되는 단계부터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하여 도로명에 대한 폭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명 변경 등에 있어 변경 전 도로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심의 위원은 주민의 신청에 의해 제척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2) 그간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을 수 없는 지역(예: 공유수면매립지 등)에서도 거주자 및 기업 등의 주소생활 편의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과 상관없는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국외에 지번 또는 변경 전 도로명주소로 국내 주소를 등록하고 있는 국민 또는 수출입 기업의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국내 도로명주소와 해외에 등록된 주소가 동일하다는 주소동일성 증명 신청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43조)

4)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주소 부여·변경 등에 있어 임차인에게도 대위 신청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건물 소유자 편의를 위해 모든 건축 행위 등을 위임받은 건축 설계자에도 대위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44조)

다. 임대건물 임차인의 주소생활 편의 도모(안 제13조 및 제35조제3항부터 제6항)

1) 임대목적 건물 신축 시에는 임차인의 주소생활 편의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세주소(동·층·호)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이 임차인의 주소생활 편의 등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 경우에는 상세주소판을 설치하도록 함

2) 임대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한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 제한

라.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의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지원을 위한

위치안내 체계 확대

- 1) 건물이 없는 도로변(산악·해안 도로 및 지방국도 등)에서 쉽게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도로변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사용한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34조)
- 2) 지점번호 표기지역(산악·해안 등)에서 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실시하는 지점번호 위치 측량을 현행 2회에서 1회 측량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마. 공적장부 주소일괄 변경 처리로 주소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 1) 주민 신청 등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변경되는 경우에 결정기관은 각종 공부의 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기관에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등을 통보함으로써 주소 정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9조)
- 2) 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가 변경되는 건물의 소유자·임차인 등은 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공부 외에 이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공부의 주소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 등의 지원 등

-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주소정보를 사용하는 관련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해 주소표준 개발, 주소정보의 편집 및 가공, 분야별 맞춤형 안내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

항)

- 2) 각종 시설물, 장소, 지도 등에서 표기하는 위치 표시가 기관별로 달라 공동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기관별 정보를 제공받아 하나의 정형화·통일성 있는 위치표시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 3) 도로명주소·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등 이 법에 따라 부여·관리하는 각종 주소정보 등의 관리·활용, 산업분야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42조)

사.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 1)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안내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고, 안내시설 중 지점번호판·사물주소판은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기관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함(안 제28조)
- 2) 주소정보시설이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되거나 정비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가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도로시설물에 설치된 안내시설의 경우 도로시설물 정비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 기관에 공사 사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 3) 건물번호판을 훼손 등에 따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재교부받아 설치하거나,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2항)

아.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별 심의 사항 변경(안 제6조)
- 2) 도로명주소의 결정, 기초구역 설정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소사용자 정보의 요청 근거 신설(안 제7조)

결정례) 도로명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2012누 17979)

- ▶(쟁점) 도로명을 사용하는 전체 주소사용자 현황의 적정성 여부
 - 타 공부 등에 등록된 주소사용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세대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도로명 변경 동의서를 받은 것은 부적정
- ▶(판결) 주소사용자 범위를 재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 3) 건물번호·상세주소·사물주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도록 함(안 제45조)
- 4)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업무부담의 경감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50조)
- 5) 명예도로명을 안내도에 표시하는 경우 도로구간을 함께 표시하고, 주소사용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 6) 벌칙 등이 부과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건물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3조)

자.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용어의 순화 등

- 1) 아니한, 귀책사유로, 없는 한 등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용어로 정비
- 2) 하여야, 아니하도록, 대하여는, 하였거나 등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불일치하는 용어의 준말 사용
- 3) 도로명주소시설 → 주소정보시설, 도로명주소기본도 → 주소정보기본도, 도로명주소안내판 → 주소정보안내판,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부여·변경·폐지 → 결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8.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도로명주소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소정보의 부여·표기·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소정보를 공공성 있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란 이 법에 따라 결정된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 등을 말한다.
2.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결정되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또는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3. “도로”란 입체적 공간 구역의 통행로와 건물·공간 내 통행로 등을 포함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위치표시가 필요한 일체의 경로를 말한다.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5.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

여된 번호를 말한다.

6.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7.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8. “건물번호”란 건물등(2개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9. “상세주소”란 건물등의 일부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표기하는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10. “사물주소”란 건물등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주소를 말한다.
11.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이하 “지점번호”라 한다).
12.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이하 “기초구역”이라 한다).
13. “구역번호”란 기초구역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14. “주소정보기본도”란 지적공부(地籍公簿) 등을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15. “주소정보안내도”란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

적으로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6. “주소정보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지주(支柱) 등 그 부속물 등을 포함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지주와 부속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소정보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물주소판, 지점번호판,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7.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을 말한다.

18. “주소사용자”란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동일인이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서면동의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대리할 수 있다)

나. 「상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다. 「민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주소가 같은 외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한 명으로 본다)

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상의 건물소유자

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소유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와 위치표시 및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소정보 구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판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집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주소정보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주소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주소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3.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도로명주소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27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주소정보안내판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42조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5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도로명주소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27조에 따른 시·도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소정보안내판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결정(폐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안내판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주소정보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협조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주소사용자의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결정하려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결정하려는 경우
 6. 제18조제3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에 지번 등으로 등록·표기된 주소를 확인하려는 경우
 7. 제20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일괄정정 신청하려는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
 9. 제24조에 따라 기초구역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 요청자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도로명주소의 결정 및 효력

제8조(도로명의 결정)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명을 결정(부여, 변경,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고시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도로명 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사물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경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도로명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도로명에 대한 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 결정권이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도로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지체 없이 도로명에 대한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도로명 결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로명 결정의 신청) ①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해 새로이 도로명 부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해당 시장등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시장등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1. 도로명이 고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
2. 주소정보위원회가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심의하여 시장등이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
3.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시장등이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구간이 소재하는 시장등(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로구간의 길이가 가장 긴 시장등을 말한다)에게 도로명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하려고 하는 도로관리청 또는 사업의 시행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기관의 장 또는 사업의 시행자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도로명의 변경을 시장등에게 신청하는 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변경 전 도로명과 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의 기피(忌避)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도로명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로명 결정의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하고 제6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시장등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등은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주소사용자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물등의 명칭(2개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건물군을 포함한다)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경우. 다만, 2011년 7월 29일 현재 부여된 도로명으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시장등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6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시장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및 주소사용자의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도로명의 결정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건물번호의 결정) ① 시장등은 건물등에 대한 건물번호 결정 신청이 있거나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 결정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물번호 결정의 신청)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에게 건물번호 부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해 새로이 건물번호 결정을 필요로 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시장등에게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멸실(滅失) 등으로 인해 건물번호 사용이 필요 없어진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건물번호의 폐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을 말소·폐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상세주소의 결정)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등의 일부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이 있거나,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임차인(해당 건물등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1.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2.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3.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거나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폐지하고 고시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세주소 결정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상세주소 결정의 신청)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신축·증축·개축 등으로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의 일부를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허가 등을 할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동주택이 아닌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는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 부여·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이 아닌 제13조제1항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상세주소 부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기한까지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차인이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물등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공동주택(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세대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소유자는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 부여·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상세주소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도로명주소 결정) 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의 경계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 결정을 필요로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로명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시·군·자치구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로명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이 결정되어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건물번호나 상세주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도

로명 및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해당 시장등에게 인계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를 인계받은 시장등은 해당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를 시장등이 결정한 것으로 보아 관리해야 한다.

제16조(주소정보 정비의 특례) ① 시장등은 주소정보를 활용한 위치 찾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긴 도로명의 정비 등 이 법에 따라 결정된 주소정보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없는 지점에서의 위치 안내 및 구조·구급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해당 지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도로명주소의 효력) ①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각종 공부에 지번 등으로 등록된 주소가 도로명주소가 없어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공부에 지번 등을 주소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 등으로 표기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주소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① 공공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부, 등기부,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시 및 위치 안내
7.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에서의 위치 표시 및 위치 안내
8.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② 공공기관장은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8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공공기관장이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지번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정비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19조(각종 공부상의 도로명주소 등록 및 관리) ① 시장등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의 공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결정 고시를 확인한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주소의 등록·변경·정정 등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비치 및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정비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화가 된 경우에는 전산화에 의한 방법으로 일괄정비하고, 전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해야 하며, 주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일괄수정되지 아니하는 주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등의 확인을 거쳐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도로명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결정·고시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결정·고시된 경우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의 정정(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주소정정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주소정정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처리한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등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리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변경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변경·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시설물과 장소의 위치 표기와 구역의 적용

제22조(사물주소) ① 시장등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등 대피소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출입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사물주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 사실을 통지하고 사물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시설물 철거 등으로 인해 사물주소를 폐지하려는 자는 시설물 철거 등을 하기 전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사물주소를 폐지하고 고시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 결정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번호를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점번호를 표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번호 표기 지역을 고시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점번호 표기 지역을 새로이 고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지점번호는 구조·구급 활동 및 해당 지역 시설물과 장소 등에서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제24조(기초구역의 설정 등) ① 시장등은 기초구역을 설정(변경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해당 구역에 맞는 번호를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시·도의 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시·도별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결정(할당·변경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단위로 시·군·구의 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시·군·구별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초구역 또는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표한 각종 구역에 대해 기초구역을 기본단위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각종 구역을 변경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초구역 설정 및 구역번호 결정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주소정보의 관리

제25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결정, 고시한 도로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번호와 상세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상세주

소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의 상세주소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도로명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로명대장 및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소정보기본도) ① 시장등은 주소정보의 결정·관리 및 활용을 위해 주소정보기본도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주소정보기본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장등이 주소정보기본도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주소정보의 효율적인 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업무범위, 자료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주소정보 표시를 위한 안내시설 등

제28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전산자료 및 전산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정비·교체·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사물주소관, 지점번호관의 정비·교체·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정비등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시설물의 정비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건물등·시설물·토지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소유물 및 점유물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 설치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29조(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의 작성·제작·배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주소정보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소정보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 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31조(원인자 부담 원칙)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교체·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교체·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교체·철거하지 않거나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부과해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주소정보시설 등의 훼손 등에 따른 조치) ①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주소정보시설을 훼손, 제거, 파손 또는 기능의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

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주소정보시설의 위치 및 종류에 대해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점검한 후, 교체·보수·철거에 따른 비용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1항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시장등이 아닌 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신고 내용 및 점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통보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도로시설물의 사용) ① 시장등은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도로표지, 전선주, 가로등, 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와 도로변 정류장 등의 시설(이하 “도로시설물”이라고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시설물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시설물 사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교체·이설(移設)·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을 설치하거나 교체·정비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위치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서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조·구급 활동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로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한 기초번호판을 설치·교체·정비할 수 있다.

③ 도로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의 확인을 거쳐 도로시설물의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물번호판과 상세주소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경우(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부착하고,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건물등은 부여받은 즉시 부착한다)에는 지체 없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해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받아 부착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이

소유자·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없어진 경우 또는 직접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제14조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장등으로부터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해당 동번호나 층수 또는 호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이하 “상세주소판”이라 한다)를 제작·설치하거나, 안내 표지를 해야 한다. 다만, 상세주소판을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을 이용하는 자가 건물등의 상세주소 부여 현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하 “상세주소종합안내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등의 소유자는 상세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편법」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우편수취함을 상세주소 부여현황에 맞도록 구분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한 경우에는 상세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는 사물주소가 결정되면 사물주소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물주소를 안내하는 표지(이하 ‘사물주소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물주소의 활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지점번호 표기 및 지점번호판 설치) ① 공공기관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시설·장소 등에 위치표기를 하거나 구조·구급 활동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점번호 표기 위치 시설물에 대한 지점번호 선정 및 검증을 시행하고 해당 시장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점번호의 부여방법과 기준, 지점번호 표기를 위한 대상물 선정 및 검증, 지점번호 표기, 지점번호판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주소정보의 활용

제38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주소정보안내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4.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 역사 및 승강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주소정보로의 위치표시 지원
 5. 관광호텔, 교통센터, 렌터카, 백화점, 부동산중개업소, 관광안내센터 등에서 비치하는 각종 안내도의 도로명주소 표기 지원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사용하는 관련 산업분야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와 연계된 산업부문이 요청하는 주소정보의 구축 및 안내시설의 설치
 2. 주소정보의 편집 및 가공을 통한 제공
 3. 공모 등을 통한 주소관련 산업분야 지원
 4. 주소기반 산업 창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5. 산업부문의 주소활용 기준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의 창출 및 지원
- ③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주소정보를 사용하는 관련 산업부문을 창출하고 지원을 위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주소정보연계 종합전산자료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 산업부문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소정보와 연계하여 전산자료로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및 관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 전산자료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한다.

제40조(주소정보의 홈페이지 안내)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주소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주소정보 등의 제공·관리 및 사용) ① 주소정보, 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연계 종합전산자료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전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관할 구역의 자료 제공을 각각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제공하거나,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려는 자는 제2항 후단으로 제한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거나 안내하려는 경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제한한 용도를 제품에 표시할 수 없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않는다.

제42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① 이 법에 따른 주소정보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주소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시·도에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원센터의 설치, 업무범위, 자료 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국외 주소 동일성 영문증명) 행정안전부장관은 각종 공문서에 등록된 주소의 변경(주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해 국외에 등록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게 된 자에게 주소 동일성에 대한 영문증명(영문주소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4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물등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가 선임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를 말한다)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4.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

제45조(고시의 방법) ① 이 법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제40조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고시를 대신할 수 있다.

1. 건물번호 결정
2. 상세주소 결정
3. 사물주소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사무의 위임·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2. 제27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 및 배포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6. 제39조에 따른 주소정보 연계정보의 종합 전산자료의 관리 및 운영
7. 제40조에 따른 주소정보홈페이지의 운영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 전산자료의 제공
9. 제42조에 따른 주소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제47조(주소정보 관리 등을 위한 조례의 제정)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주소 정보를 결정·관리하고 구조·구급 활동 등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 등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 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48조(수입의 사용) 제30조제4항에 따른 광고 수입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명예도로명) ①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결정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업 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을 주소정보안내도에 도로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③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의 세부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51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2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및 지점번호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이전·제거하거나, 고의로 훼손 또는 기능의 장애를 초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가 제2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

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교부받고 부착을 하지 않은 자, 건물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기로 신청하고 부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소정책과	
연 락 처	02-2100-3655